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 2984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□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 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□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문화·예술·장학·체육·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거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・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, 현재 서울의료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세종 문화회관, 서울장학재단, 서울디지털재단 등 16개의 출연기관이 설립·운영되고 있습니다.
-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거 서울시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기관별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,

다만, 현행 조례 등에 따라 서울시 출연 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,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운영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기관별 주무부서의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」 제11조에 출자·출연 기관이 '예산편성, 기구 및 정원 변동, 임 직원 채용·면직,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 와 협의하고,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'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또한, 안 제2조에 '총괄부서'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,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, 성과계약, 재정 운영실적 평가,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, '주무부서'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·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의하였습니다.
서울시 출연 기관들은 의료, 정책연구, 산업진흥, 금융, 교육, 복지, 문화예술, 양성평등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요 산하 기관입니다.
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출연기관별 주무부서 및 출연기관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 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